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송기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82

발의연월일: 2024. 7. 8.

발 의 자:송기헌·문대림·박균택

박정하 • 백승아 • 윤건영

윤준병 • 정성호 • 정준호

정춘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해 지역 주민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·운영 중인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.

그러나 영세한 축산농가 및 축산업자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 및 개선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실정임.

이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저감시설의 설치와 가동에 필요한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악취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국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(안 제42조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농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저감시설 설치·가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	행		개 정 안
제42조(국고보조)	1 • 2	(생	제42조(국고보조) ①・② (현행과
략)			같음)
<u><신 설></u>			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
			는 축산농가 등에 대하여 예산
			의 범위에서 악취저감시설 설
			치・가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
			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
			<u>다.</u>